

의안번호	2204396
의 퇴 인	이수진의원
회 답 일	2024. 11. 4.
추계번호	24D4024

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4조의4 (청년지원센터 의 지정)제5호 신설	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무총리가 지정하는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¹⁾ 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, 창업,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업무를 추가함	의무 규정

II.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24조의4 (청년지원센터의 지정)제5호 신설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(지역별 청년지원센터업무에 법률상담지원 추가) 현재 각 지역의 청년지원센터에서는 주거, 금융, 교육, 일자리 등 청년이 필요로 하는 청년정책과 서비스를 종합 안내하고 있음

1) 「청년기본법」 제24조의4(청년지원센터의 지정 등) ① 국무총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 인력 및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청년단체등 또는 청년시설을 지역별 청년지원센터(이하 “지역센터”라 한다)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
2. 지역 청년단체,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
3. 지역의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과 관련한 조사
4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청년지원 사업
5. 그 밖에 청년발전 또는 청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②~⑥ (생략)

-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전국 237곳(2023년 12월 말 기준)에서 운영되고 있고²⁾, 청년정책의 안내 및 홍보, 청년시설 등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
- 개정안에 따라 지역별 청년지원센터의 업무에 청년의 취업, 창업, 주거 및 금융생활 등과 관련된 법률상담 지원업무를 추가하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
- 다만, 청년지원센터의 법률상담 지원 수요 및 법률상담지원 방식 등의 세부사항이 구체화되지 않아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곤란함

Ⅲ. 부대의견

□ 없음

Ⅳ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행정비용추계과	여은구	김안나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여은구	02-6788-4673	cecil@assembly.go.kr

2)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고,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의 '청년정책총괄조정 및 지원' 사업의 내역사업인 '오프라인 청년 통합지원체계 구축' 사업에서는 중앙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,270백만원(2024년) 편성